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기간의 상한 명시〉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498호)

2026. 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기간의 상한 명시	2
[참고자료] 현행법상 제재처분 기준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8. 29.
3. 회 부 일 : 2025. 9.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대하여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기간의 상한 명시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중 업무정지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① ----- ----- ----- ----- ----- -----6개월 이내의 정지-----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함)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¹⁾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호시설”이라 함)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²⁾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함)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³⁾에는 각각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⁴⁾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⁵⁾하고 있음.

-
-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략)
-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시정 명령)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이 제1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설치·지정 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강사의 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4.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

한편, 「행정기본법」 6) 제22조7)는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업무정지처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 유사입법례를 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8)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업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정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6)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2021. 3.23. 제정·시행되었음.

7)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5]는 최장 업무정지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음.⁹⁾

다만, 개정안은 “6개월 이내의 정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법률에 따른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에 동의하여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50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제15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9) [참고자료] 현행법상 제재처분 기준.

【참고자료】

1. 현행법상 제재처분 기준¹⁰⁾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업무의 폐지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보호시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입소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보호시설이 없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 취소
나.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상담소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 취소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5]의 일부 발췌.